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699
----------	------

2024년 04월 23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04월 03일, 이영실 의원 외 27명
나. 회부일자 : 2024년 04월 08일
다. 상정일자 : 제32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4년 04월 23일 상정·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이영실 의원)

가. 제안이유

- 현재 공원 및 학교 등에 설치된 아리수음수대의 경우 해당 기관 및 용역을 통해 음수대의 유지관리를 하고 있음. 이에 철저한 위생 및 유지관리를 위해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해 아리수음수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시장의 음수대 위생관리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과 음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9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귀수)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원 및 학교 등에 설치된 아리수 음수대를 철저히 관리(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아리수 음용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서울시는 현행 조례 제6조에 따라 학교와 공원 등에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고 있으며,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음수대는 해당 기관이 소유하고 있음.
- 또한, 제9조에서는 음수대의 위생 및 유지관리를 해당 기관에서 하도록 관리 주체를 명시하고 있으나, 음수대 소유 기관의 관리 소홀과 서울시의 지도·감독 부재 등으로 인해 일부 음수대에서 고장, 위생문제, 음용환경 불편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에 안 제9조제2항과 같이 음수대가 설치된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마련하여 음수대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아리수 음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음수대 설치·보급 취지에 미뤄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한편, 급수설비 중 저수조, 급수관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위생 조치 이행여부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지도·감독 이후 적발시 「수도법」 규정에 따라 제재(벌금, 과태료)하고 있음.

- 다만, 음수대의 경우 2024년 4월 기준 2,899개소에 26,655대가 설치되어 있어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상위법령 근거 부재로 인해 음수대 관리 소홀 등에 대해 실질적 제재는 쉽지 않겠지만,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¹⁾을 들여 음수대를 설치하고 있는 만큼 종합적인 음수대 관리 및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고 법령의 범위에서 가능한 수준의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이밖에, 학교 등 교육시설의 경우, 아리수본부가 일괄 위임을 받아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 음수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용역 업체 선정 시 철저한 음수대 유지 및 위생관리가 가능하도록 이행 조건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할 것임.

1) 2024년 음수대 구매 설치 비용(배관공사비 제외) : 17억 9천만원(133만원/대 * 1,346대)

※ 음수대 구매 총 누적사업비('06년(최초) ~ '23년) : 1,043억 4천만원(구매 설치 및 유지관리 포함)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제 6 조(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수대 설치를 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 2 조에 따른 학교
2. 「고등교육법」 제 2 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 제 31 조제 2 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4. 「유아교육법」 제 7 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5. 공공기관의 민원실 또는 복도 등 공용 공간
6. 공원, 광장, 차 없는 거리 등 보행자들이 많은 도심의 주요 지점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7 조(귀속 및 비용부담) ① 제 6 조에 따라 설치된 음수대의 소유는 설치된 기관으로 한다. 이때 설치기관은 별지 제 1 호 서식의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 6 조에 따른 음수대 설치를 위한 비용은 서울특별시 예산으로 한다.

제 9 조(관리) ① 음수대의 청소 등 위생관리 및 고장 등 유지관리에 대한 조치는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음수대에 대하여는 연차별 계획에 따른 교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과 협의하여 위임할 수 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의 음수대 위생관리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음수대 음용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관리) ① (생략) <u><신설></u></p> <p>② ~ ④ (생략)</p>	<p>제9조(관리) ① (현행과 같음)</p> <p><u>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의 음수대 위생관리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음수대 음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u></p> <p>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p>